

■ 최신 법령 ■

[조세] 기타소득 중 사례금의 범위 및 사업자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범위의 확대

임승혁 공인회계사 | 김태형 변호사

1. 개정 이유

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활동을 통하여 소속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포함시키고, 그 금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(算入)하는 금액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,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(計上)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(耐用年數)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기계 및 장치 등 설비투자자산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여 사업자가 설비에 투자한 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.

2. 주요 내용

가.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에 따른 금품의 추가 등(제41조제10항 및 제81조제1호라목 신설)

종교 관련 종사자의 특성과 소속 종교단체 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이나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을 통하여 그가 소속된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포함시키고, 그 금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은 금품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것입니다. 위 시행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, 개정규정은 위 시행령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.

나. 사업자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범위의 확대(제63조제5항·제6항 신설)

- 1) 사업자가 투자한 기계 및 장치 등 설비투자자산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연수의 25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가 설비투자비용을 조기에 회수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.
- 2) 사업자가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기계 및 장치 등 설비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설비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투자한 금액보다 증가한 경우 기준내용연수에 그 연수의 50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.
- 3) 사업자가 신고하는 기계 및 장치 등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선택 범위를 확대 함으로써 사업자의 설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4) 위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(2013년 11월 5일)부터 시행되며, 위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부터 적용됩니다(부칙 제3조).

3. 다운로드 : 「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」